

# 1 예산총칙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12,208,619,000	366,258,570
일반회계	10,830,673,000	324,920,190
특별회계	1,377,946,000	41,338,380
기타특별회계	1,377,946,000	41,338,380
의료급여기금	664,353,035	19,930,591
치수사업	8,702,000	261,060
광역교통시설	14,262,779	427,883
발전소등 지역자원시설세	88,356,293	2,650,689
학교용지부담금	58,086,770	1,742,603
낙후지역발전	7,286,123	218,584
소방	536,899,000	16,106,97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6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